#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05

발의연월일: 2024. 6. 14.

발 의 자:이병진・이재관・이연희

송옥주 · 임호선 · 윤준병

주철현 • 복기왕 • 유후덕

이원택 • 권칠승 • 한민수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농산물 비축 및 수매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WTO 수입의무물량과 수 급 부족 물량을 수입·비축하였다가 방출하는 수입비축사업은 농림축 산식품부훈령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.

최근 고물가 상황으로 수입비축사업의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, 물가 안정에 대한 소비자 체감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. 또한 정부가 수입 및 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국영무역 품목사업의 경우 수입단계 이후의 공급 및 판매 등에 대한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입비축사업의 취지 및 목적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

자로 하여금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 등을 위탁사업수행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, 정부가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 등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실수요자,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정부의 수입농산물 수입비축사업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3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3조의2(비축사업 관리)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(이하 "위탁사업자"라 한다)는 농산물 수입을 위한 사전검토 사항, 수입 및 판매 계획, 공급업체선정,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당해연도 국영무역 품목에 대한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당해연도 국영무역수입농산물판매실적을 다음해 상반기까지 위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을 토대로 물가안정 등 사업 효과성과 배분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, 그 점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실수요자, 생산자, 농업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

다음연도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 수립 및 반영·판매실적·사업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3조의2(비축사업 관리) ① 제1
	3조제4항에 따라 국영무역 품목
	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위
	탁받은 자(이하 "위탁사업자"라
	한다)는 농산물 수입을 위한 사
	전검토 사항, 수입 및 판매 계
	획, 공급업체 선정, 제도개선에
	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당해연
	도 국영무역 품목에 대한 수입
	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매년 3
	월말까지 수립하여 농림축산식
	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	② 제1항에 따라 수입농산물을
	공급받은 자는 당해연도 국영무
	역 수입농산물판매실적을 다음
	해 상반기까지 위탁사업자에게
	보고하여야 한다.
	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
	보고받은 실적을 토대로 물가안
	정 등 사업 효과성과 배분의 적
	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
	을 실시하고, 그 점검결과를 농
	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
	여야 한다.
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보고받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실수요자, 생산자, 농업 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 렴을 거쳐 다음연도 수입농산물 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 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 수립 및 반영·판매실적·사업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한다.